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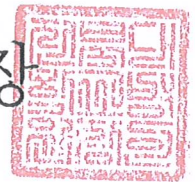
공고 제2018- 1 호

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편입용지 보상계획 공고

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북대학교병원이 시행하고 군산시장이 위임받아 토지(지장물) 보상을 하는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 편입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(토지의 면적 또는 지목, 물건누락 등)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8년 6월 18 일

전북대학교병원장



1. 사업 개요

- 사 업 명 : 군산전북대학교병원 건립
- 사업위치 : 군산시 사정동 194-1번지 일원
- 사업기간 : 2013 ~ 2021년
- 면 적 : 사업부지 108,388㎡
연면적 63,500㎡
- 규 모 : 500병상 이상 종합의료시설(지하 3층, 지상 8층)
- 사업시행자 : 전북대학교병원(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)

2. 보상계획

- 보상방법 : 소유자별 개별 협의보상
- 보상대상 : 군산시 사정동 194-1번지 일원(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게재를 생략하고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에 비치함)
- 보상시기 : 감정평가 실시 후 협의공문 통지('18년 8월 이후 예정)

- 보상금산정 :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
 ※ 전북도 추천 1인, 군산시 추천 1인, 토지소유자 추천 1인 (최대 3인)
- 보상금지급 :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
-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사 추천(토지소유자)
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→보상 협의→소유권이전 및
 보상금지급→수용재결(협의 불성립 시)→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

3. 열람 및 이의신청(의견제출) 안내

- 공고기간 : 2018. 06. 18 . ~ 2018. 07 . 02 .(15일간)
-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기한 : 2018. 06. 18 . ~ 2018. 07 . 02 .
 (토·일, 공휴일 제외)
- 열람장소 :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계(군산시 시청로 17)
- 열람방법 : 방문열람
- 이의신청 : 의견서(열람소에 양식 비치)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

4. 감정평가 추천안내

- 추천방법
 -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아래의 추천요건을 갖춘 후
 ‘감정평가업자’ 추천서를 작성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
 30일 이내 제출
- 추천요건
 - 『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
 제28조제4항에 의거 ‘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
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
 동의필요
 - 이 경우, 토지소유자는 1인의 감정평가업자만 추천이 가능하며,
 기한 내 추천이 추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북도 추천 감정평가업자
 및 군산시 추천 감정평가업자 2인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.

5. 기 타

-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, 폐문부재나
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
대체합니다.
- 보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군산시 도시계획과
도시정비계(☎ 063-454-352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